

2017년도

제2차 전체이사회 회의록

2017. 7. 24. (금)

사단법인 대한테니스협회

목 차

I. 보고 안건	1~2
1. 전차 이사회 초록	1
2. 주요업무 현황 보고	2
II. 심의 안건	3~6
1.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1차 및 2차계고로 인한 육사테니스코트 원상복구의 건	34
※ 별첨.구리시 1차 및 2차 계고장	
2.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 상금규모 변경의 건	5
※ 별첨.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협의 내용	
3. 2017년도 네이버 미디어지원금 예산 편성의 건	6
III. 기타 토의	7

I. 보고 안건

1 전차 이사회 초록

○ 2017년 5월 16일 (화) 대한테니스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2017년도 제1차 전체이사회는 10시 21분 임원 26명 중 14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였고, 11시 54분에 이사회를 종료하여 폐회를 선언하였습니다.

○ 성원된 2017년도 제1차 전체이사회에서 전차 초록 보고와 주요 업무 현황 보고로 홍보 관련 업무보고, 공인검정위원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과 연구사업 계약” 보고, 데이비스컵 및 페드컵 상금 배분 지침 변경의 건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 안건으로는 스포츠평정위원회 위원장 및 동일대학 출신자 구성의 건, 국가대표 선발규정 개정의 건, 국가대표 선발 기준 규정 개정의 건, 생활체육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 신규사업 및 대회개최의 건, 2017 시도협회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의 건, 생활체육 후원계약 위반 시도 제재의 건, 변호사 선임의 건을 포함하여 총 8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기타사항은 개최 선언하기전 다루었던 대한체육회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2 주요업무 현황 보고

○ KTA 테니스 레슨 영상콘텐츠 제작 및 대회 중계방송 업체 선정

- 1) 사업목적: 레슨 및 중계영상 제작을 통한 국내 테니스 저변확대 및 활성화
- 2) 사업재원: (주)네이버로부터 2017년 제작지원금 1.5억원 유치
- 3) 업체선정
 - 심사일정: 2017년 7월 4일(화) 오전 10시, 협회 회의실
 - 심사위원(총 5명)
 - * 내부: 황광선 이사, 김은영 경기팀장, 김성인 지원팀장
 - * 외부: 대구광역시테니스협회 임재섭 이사, (주)네이버 한규성 차장
 - 심사결과
 - * 심사결과: (주)에스티엔이 우선협상자로 선정(협의를 통한 계약 체결)
 - * 참가업체: 아이탐이십일닷킵, 아이스포티브이, 에스티엔 총 3개 업체 응찰

○ 온라인 테니스 중계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KTA-NAVER 업무협약식

- 1) 일 시: 2017년 7월 12일(수) 14시 30분
- 2) 장 소: 대한테니스협회 회의실
- 3) 참석자(총 11명)
 - KTA: 김남훈 부회장, 김은영 차장, 이성재, 김광현 대리, 이정빈, 추서운 직원
 - NAVER: 금현창 이사, 장진욱, 손승진 부장, 김연균, 이학범 과장
- 4) 협약사항
 - 온라인 테니스 대회 중계방송 및 레슨 콘텐츠 제작비 지원
 - 2017년 1.5억원(레슨 포함), 2018년 1억원, 2019년 1억원, 3년 지원 확정
- 5) 세부계획
 - 중계방송
 - * KTA 주최, 주관 대회 주요경기(준결승/결승) 인터넷(네이버TV) 생중계
 - * 2017년 하반기 대회 중 전문체육 15개 대회, 생활체육 10개 대회 중계 가능
 - * 대회 중요도 및 규모를 기준으로 주요경기 선정하여 중계할 예정
 - 레슨영상
 - * 2017년 9월부터 매주 1편씩(5분 분량), 네이버TV를 통해 1년간 50편 공개
 - * (주)에스티엔과 세부 운영계획 협의 中

Ⅱ. 심 의 안 건

1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원상복구 1차 및 2차 계고로 인한 육사코트 원상복구의 건

가. 의결주문

개발제한규정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원상복무 1차 및 2차 계고 접수로 인한 육사테니스코트 원상복구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함.

나. 제안사유

우리 협회에서는 정관 제8조 2항 및 제14조 2항 및 3항, 제17조에 의거하여 구리시 도시과로부터 육사테니스코트 개발제한규정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1차 (도시과-7692 / 2017.6.5) 및 2차 (도시과-8862 / 2017.6.28) 계고가 별첨과 같이 접수됨에 따라 시간적 제약이 있는 긴급한 사유이므로 이에 대하여 서면 의결을 받아 임시총회 심의 안건으로 올리고자 함

※ 관련규정 제 8 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② 협회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협회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협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1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② 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③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제17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의 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다. 내 용

구리시로부터 접수된 육사테니스코트 개발제한규정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해 자진하여 원상복구 하지 않을 경우“개특법 제31조와 제32조” 및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장”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될 뿐만 아니라, “행정대집행법 제3조2항”에 의거 강제집행될 수 있으며, “개특법 제30조2”에의거 이행강제금이 부가됨에 따라 육사테니스코트 가림막시설의 원상복구(철거)에 대하여 시간적 제약이 있는 관계로 서면으로 의결을 대신하여 대의원총회로 심의 안건으로 올리고자 함

* 별첨 : 구리시 1차 계고 문서 도시과-제7692호 (2017.6.5)

구리시 2차 계고 문서 도시과-제8862호 (2017.6.28)

라. 서면결의 결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됨

가. 의결주문

한국선수권대회 훈련연구비(상금)를 1억에서 5천만원으로 하향하여 변경코자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함.

나. 제안사유

우리협회 정관 제14조 2항 1 및 제17조, 제46조 1항에 의거하여 지난 6월 26일 (월) 오전 10시 53분에 김은영차장 주최로 모바일메신저에서 협의한 한국선수권대회 훈련연구비(상금) 하향 변경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심의·의결코자 함.

* 정관

제1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② 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제17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의 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46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내 용

협회 자금 가압류로 인한 재정난으로 한국선수권대회 훈련연구비(상금)를 1억에서 5천만원으로 하향코자 하였으며, 임박한 날짜로 인해 지난 6월 26일 (월) 오전 10시 53분에 김은영차장 주최로 모바일메신저에서 우선 심의후 의결하였고 최종적으로 심의·의결코자 함.

* 별첨 :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대화 내용

라. 결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됨

가. 의결주문

2017년 네이버 미디어지원금(1.5억원)의 대한테니스협회 정규 예산 편성 건을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함.

나. 제안사유

(사)대한테니스협회 정관 제14조, 제46조에 의거하여 2017년 네이버 미디어지원금(1.5억원)을 대한테니스협회 정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 승인받고자 함.

* 정관

제1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② 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제46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내 용

- 국내 테니스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지원금(인터넷 대회 중계, 레슨 콘텐츠 제작)을 네이버에 제안함.
- 2017년 7월 12일(수) 14:30 대한테니스협회 회의실에 열린 ‘온라인 테니스 중계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KTA-NAVER 업무협약식’에서 2017년도 1.5억원의 미디어지원금 유치 확정함.
- 2017년 7월 4일(화) 10:00 대한테니스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KTA 테니스 레슨 영상콘텐츠 제작 및 대회 중계방송 업체 선정’ 심사를 통해 (주)에스티엔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중에 있음.
- 위와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해 네이버의 미디어지원금을 2017년도 대한테니스협회 정규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함.

라. 결의 결과

전원 찬성으로 의결됨.